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935호
- 발의자 : 강감창 의원
- 발의일자 : 2015년 12월 10일
- 회부일자 : 2015년 12월 11일

2. 제안이유

-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설치한 서울 시민청에 대한 시민들의 방문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서울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청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시민청의 확대설치에 대해서는 서울 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는 시민청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청에만 두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는 바, 시민청 확대 설치를 위해 시민청 소재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확대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시민청의 위치를 서울시 청사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확대함(안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심사대상 아님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서울시는 2013. 1. 개관된 “시민청”과 유사한 시설을 청사 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개정한 바 있음(2015.4.2.).
 - 2015년 4월 조례개정을 통해 주된 청사 외의 지역에 시민청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SETEC 부지 내 유희 공공시설인 SBA컨벤션센터(가설건축물) 등과 같은 시설물에도 시민청 조성이 가능하게 됨.

〈관련조례 개정 사항(2015.4.2.)〉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전 :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u>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내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행사 공간을 말한다.</u>· 개정후 :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u>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u> |
|---|

- 현재 ‘동남권역 제2시민청 조성 추진’ 외에도 ‘잠실지하광장 제2시민청 건립계획’ 및 ‘도봉구 구청사 활용 주민청 조성 추진’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2시민청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서울특별시 소유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안 제2조제1항),

현재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된 청사 등”이라는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판단됨.

다만, 현재 개정안이 충분히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허용 요건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 입법)이나 허용 불가요건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 입법)은 법 해석에 한계를 주어 시민청의 정의를 축소시키므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제2시민청의 지역 수요를 반영하는데 제한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u>서울특별시 주된 청사 등에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u></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시민청(市民廳)"(이하 "시민청"이라 한다)이란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u>서울특별시 소유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u> 설치·운영하는 전시, 공연 등 각종 사업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p>

- 또한 제2조제1항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시장”으로 하기로 했으므로, 제3조제4항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수정함은 타당함.

현행	개정안
제3조(개관 및 휴관) 시민청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 3. (생략) 4. <u>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u> 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3조(개관 및 휴관)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u>시장</u> 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붙임 1> 시민청 관련 기본자료

<붙임 2> 2015년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예산

<붙임 3> 2016년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예산(안)

<붙임 1> 시민청 관련 기본자료

1 시설개요 및 추진경과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시 신청사내 (지하 1,2층)
- 규 모 : 총 8,150.65㎡(2,465.56평)/B1 5,401.02㎡, B2 2,269.75㎡, B4 479.88㎡
- 개 관 일 : 2013. 1. 12(토)

2 공간구성 및 프로그램

□ 시민청(聽) 평면도 현황

지하 1층 : 시민이 참여하는 비움과 유연성의 공간



지하 2층 : 심화 프로그램 공간

B2



□ 공간별 주요 프로그램

(단위: m²)

구분	명칭	면적	주요내용 및 프로그램
지하1층	시민청 안내센터 서울관광안내센터	85.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청 관람안내 및 다양한 서울 생활·관광 정보 제공 ○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One-stop 정보안내센터
	톡톡디자인가게 기념품가게 다누리매장	18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청년창업센터 등 사회배려기업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우수제품 전시 및 판매
	도란도란카페 &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252.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무역상품 및 음료 판매, 관람객의 휴식 공간
	담벼락미디어	316.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영상 월 배치, 터치스크린형 낙서테이블 배치
	시민플라자	579.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청에서 가장 넓은 공간으로 다목적 가변형 공간 ○ 한마음살림장, 시민발언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활짝라운지	37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 및 토론 등 다용도로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활력콘서트 등 진행
	군기시유적전시실	899.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 건축과정에서 발견된 유구 및 유물 전시
	소리갤러리	112.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관련된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는 공간 ○ 청각을 통해 감상하는 소리작품 갤러리
	시티갤러리	198.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사 건립이야기, 서울시 주요문서 및 미래유산 전시 ○ 서울시 주요 정책 전달 공간(홍보관) 포함
	뜬구름갤러리	1554.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의 스크린 화면을 이용 소리 없는 영상 작품전시
	시민청갤러리	24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장르 및 '서울'을 테마로 한 기획전시 공간
	서울책방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과 관련한 다양한 테마의 도서 판매 전시공간, 동화구연프로그램

지하2층	태평홀	37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청사의 태평홀 재현, 시정의 역사를 느낄수 있도록 연출 ○ 다양한 정책토론 및 주요행사 진행, 시민청결혼식
	시민플라자	86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다목적 가변형 공간
	이벤트홀	37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청결혼식(전통혼례) 등 시민과 기쁨을 같이 할 이벤트 프로그램 진행 ○ 지하1·2층 연결, 수직이동 무대 설치로 감동과 재미 부여
	바스락홀	29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인 내외의 시민이 대어·이용 할 수 있는 미니 콘서트룸 ○ 매주 주말 바스락콘서트 공연 실시
	워크샵룸	195.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토론과 워크샵 진행 ○ 시민대학, 시민교양 강좌 등 각종 강좌 진행
	동그라미방	6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주체가 되는 다양한 워크샵, 강좌 및 어린이 프로그램 등 진행

3 시민청 결혼식

- 추진근거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가정의례의 의식절차 합리화와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조장하여 허례허식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
- 추진현황 : 결 혼 식 : 총 94회, 평균비용 600만원(하객 70명 기준)
 - 부부교육 : 총 7회 465쌍 이수, 시민청결혼식 94쌍 중 38쌍 이수
 - 시민청결혼식 횡단전개
 - 2014년부터 서울연구원 야외결혼식 참여자 모집·선정 진행
 - 시 소재 공공시설 결혼식장 운영 등 확산 관련 여성가족정책실 협력
- 타 기관 사례
 - 중앙부처(여성가족부)
 - 혼례종합정보센터 운영, 청와대사랑채 결혼식 개최 등 혼례문화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작고 뜻 깊은 결혼식을 장려하고 있음.
 - 타 시도에서도 감소한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공공시설 혼인예식장 개방, 감소한 혼례예식 여건 조성, 사회적공감대 확산, 올바른 결혼가치관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시청, 수원우체국 등 벤치마킹 진행

<붙임 2> 2015년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예산

시민청 운영 및 확산

□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계			4,549,431천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	407,337천원
	- 시민청 시범 확대 관련 관리비	=	407,337천원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	=	93,000천원
	- 시민청 추가 건립 타당성 등 연구	=	93,000천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	2,465,587천원
	- 시민청 운영	=	2,010,739천원
	▷ 인건비	=	489,824천원
	▷ 일반관리비	=	458,638천원
	▷ 시설유지관리비	=	257,615천원
	▷ 사업비	=	804,662천원
	- 시민청 시범 확대 운영	=	454,848천원
	▷ 인건비	=	97,382천원
	▷ 일반관리비	=	202,466천원
	▷ 시설유지관리비	=	55,000천원
	▷ 사업비	=	100,000천원
시설비	○시설비	=	1,571,755천원
	- (시민청 시범확대) 시설비	=	1,571,755천원
	▷ 공사비	=	1,499,903천원
	▷ 설계비	=	71,852천원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비	=	11,752천원
	- (시민청 시범확대) 시설부대비	=	11,752천원

<붙임 3> 2016년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예산(안)

시민청 운영 및 확산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계		3,122,583천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 152,855천원
	- 시민청 운영 홍보	= 30,000천원
	- 와이드칼라 제작 및 부착	= 9,360천원
	- 운영수당	= 6,900천원
	- 관리비	= 60,720천원
	- 임대료(토지사용료)	= 45,875천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	= 2,969,728천원
	- 시민청 운영	= 1,946,388천원
	▷ 인건비	= 495,641천원
	▷ 일반관리비	= 563,132천원
	▷ 시설유지관리비	= 156,615천원
	▷ 사업비	= 731,000천원
	- 동남권 시민청 운영	= 1,023,340천원
	▷ 인건비	= 175,668천원
	▷ 일반관리비	= 554,472천원
	▷ 시설유지관리비	= 56,700천원
	▷ 사업비	= 236,500천원